

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허가일		처리기간		보건복지부: 22일 시·도: 17일	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		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전화번호			
법인	법인의 명칭						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		전화번호			
	합병 목적								
	사업의 종별								
자산	기본 재산	목적 사업용	종류	규모	평가액 (천원)	연간수익액 (천원)	출연자		
			계						
		수익용							
	계								
	보통 재산	종류		수량		가액(천원)			
	임직원	임원	직위	임기	성명	생년월일	주소		
직원		총 인원		명	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		명		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.									
보건복지부장관 시·도지사			신청인 귀하		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.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·정관·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. 정관변경안 1부 다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.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 마. 재산의 평가조서 1부(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 바. 재산의 수익조서 1부(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,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) 2.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. 합병취지서·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.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등기부 등본 2. 토지등기부 등본 3. 개별공시지가 확인서	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